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346628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구찬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8,7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12. E 주식회사에 부산 수영구 F 토지에 지하2층 지상12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20.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층 출입구 실내외 공간 인테리어공사, 2-3층 엘리베이터 복도 공간 인테리어공사, 4-12층 전체 인테리어공사, 12층 인피티니족욕장 타일마감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9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1. 8.부터 2020. 4. 19.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20. 4. 말 E 주식회사와의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5. 20.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49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최종지급시기는 준공 후 10일), 공사기간 2020. 5. 25.부터 2020. 7. 2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보험료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0. 8. 2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39,971,279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은 2020.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0. 10. 7. 무렵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이용한 사다리차의 비용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2020. 10. 13.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다리차비용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가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답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사다리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사다리차비용으로 4,1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9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 중 439,971,27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2,828,7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시공에 미시공, 오시공이 있고 그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7,370,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45,458,72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7,370,000원의 하자보수비 배상책임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해지하여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 7,37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으로 52,828,7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52,828,721원(=492,800,000원 - 439,971,279원)이다.

3) 하자보수비

가) 다툼 없는 부분

원고가 시공하여야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4-12층 수장 및 마감공사 불량, 4-12층 습식공사 불량, 4-12층 전기설비공사 불량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가 7,3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8,107,000원(=공사비 7,370,000원 + 부가가치세 737,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1층 외부, 12층 천장, 1층 배전반

을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1층 외부 담장공사, 12층 기계실 천장공사, 1층 배전반 마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그 시공비용은 7,410,000원{=1층 외부 담장공사와 12층 기계실 천장공사의 공사비 7,0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1층 배전반 마감공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시공비용은 8,151,000원(=7,410,000원 + 74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공사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2020. 1. 9.자 하도급공사계약을 원고와 피고가 도급인과 공사기간만 변경하여 다시 체결한 계약으로서 원고의 공사범위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이고, ②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공사범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즉 1층 출입구 실내외 공간 인테리어공사, 2-3층 엘리베이터 복도 공간 인테리어공사, 4-12층 전체 인테리어공사, 12층 인피티니족욕장 타일마감 및 기타 공사인 사실이 인정되며, ③위와 같은 사실과 위 공사들이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를 종합하면, 위 공사들도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직접 수리한 하자보수비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원고가 미시공하거나 오시공하여 피고가 별지 '피고가 직접 보수공사한 부분'의 기재와 같이 15,839,000원을 지출하여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원고가 EV홀 외부전등을 망실하여 이를 재부착하는 비용으로 8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외부전등을 망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외부계단(마천석)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을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페인트 뿔칠공사를 하면서 마천석으로 시공된 외부계단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외부계단이 오염되어 변색된 사실, 오염물질이 마천석에 깊이 스며들어 그라인더로 갈거나 화공약품으로 세척하는 방법으로는 본래의 색으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오염된 마천석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천석으로 시공하는 비용은 50,380,000원(=공사비 45,800,000원 + 부가가치세 4,580,00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주의한 시공으로 피고의 재산인 외부계단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여 피고에게 수리비 50,38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C(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D은 수리비에 관하여 위 외부계단을 그라인더로 가는 방식으로 보수하면 족하여 그 비용은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이 사건 공사로 시공한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미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물인 점, ②위 D은 마천석 계단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보수방법으로서 과다하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라인딩 방식으로는 위 계단의 본래의 색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리방법은

계단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는 교체비용인 50,38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7,370,000원의 하자보수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지를 요구한 시기는 약정한 공사기간이 지났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원고의 시공에 미시공, 오시공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의 해지 요구에 원고도 동의하여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의 위 해지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52,828,721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2,477,000원(=8,107,000원 + 8,151,000원 + 15,839,000원 + 50,38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계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2,000,000원과 공사대금 52,828,721원의 합계 54,828,72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2,47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2022. 5.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피고가 직접 보수공사한 부분

순번	작업내역	공사업자	공사비(원)
1	주출입구 벽체, 방수석고 설치작업	H	3,190,000
2	스파하부 방수작업	I	3,113,000
3	객실내부 목구조물 작업 및 마감	J	950,000
4	복도 벽체 및 천정 마감	K	1,816,000
5	외부파티션벽체 타일시공	L	1,210,000
6	내부 및 화장실 인테리어공사	M	1,400,000
7	객실내부 및 복도 시트작업	N	2,460,000
8	1층 외부타일	O	1,700,000
합계			15,839,000

1) 위 준비서면에는 ‘공제’라고 표현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상계의 의사표시로 보았다.